

한국콘텐츠진흥원 단체협약 개정 합의서

1. 한국콘텐츠진흥원 노사는 공공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상호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일부 개정에 합의한다.

현행	개정안
<p>제40조(휴직)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직기간은 치료기간으로 한다. 나. 보수는 6개월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p>제40조(휴직)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나. 보수는 1년간 급여의 60%를 지급하고, 이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1년에 한하여 급여의 40%를 지급한다. 2. 업무상 상병으로 병가기간 후에도 계속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휴직기간은 치료기간으로 하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보수는 휴직기간 중 100%를 지급한다.
<p>제65조(특별휴가) ①진흥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정기일의 경조휴가를 준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 본인 5일, 자녀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회갑, 칠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3. (출산) 배우자 3일 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p>제65조(특별휴가) ①진흥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정기일의 경조휴가를 준다.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2. (조항 삭제) 3. (출산) 배우자 5일(무급 2일 포함) 4.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5. (입양) 본인 20일

2. 한국콘텐츠진흥원 노사는 기관 발전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2014년 3분기 노사 협의회 결과를 존중하며,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의한다.
3. 한국콘텐츠진흥원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 개정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당 제도 운영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2014년 9월 30일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콘텐츠진흥원</p> <p style="text-align: center;">원장 흥상표</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 이성우</p> <p style="text-align: center;">(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지부장 김형민</p> <p style="text-align: center;">(서명)</p>
---	---